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190
----------	------

2025년 12월 22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20., 박성연 의원(22명 찬성)
- 나. 회부일자 : 2025. 10. 23.
- 다.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25년 12월 22일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최근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각종 행사 추진 시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칭 또는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승인 절차나 관리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사용과 상업적 이용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여 명칭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후원명칭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용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함 (안 제2조)
- 승인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여 공익적 행사 중심으로 후원명칭이 사용되도록 함 (안 제3조)
- 신청 절차, 제출서류 및 보완요청 등 후원명칭 사용신청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 여부를 심사·의결하도록 함 (안 제6조)
- 승인취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의 공개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갈음

다. 기타사항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10. 28.(화) ~ 2025. 11. 1.(토) (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수정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제정안 개요

- 본 제정안은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사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후원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성과 대외적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2 제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의회는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201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예규 제107호)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승인 요청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 89건에서 2025년 11월 말 기준 164건으로 75건 증가하여, 승인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및 대외적 신뢰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제정안의 구조 및 조문별 검토

가. 제정안의 구조

- 본 제정안은 전체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승인대상 및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문체계 및 구성>

구성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조례의 목적 명시
제2조(정의)	후원명칭의 정의
제3조(승인대상)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제1항) 및 승인제외 대상(제2항) 규정
제4조(사용신청)	후원명칭 사용신청(제1항) 및 보완(제2항) 규정
제5조(사용승인 등)	사용승인 절차(제1항) 및 결과 통보(제2항) 규정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구성 근거(제1항), 심의·의결 사항(제2항), 위원구성(제3항·제4항), 위원회 운영(제5항·제6항), 간사 지정 등(제7항) 규정
제7조(승인취소 등)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제1항), 소명(제2항), 제한(제3항) 규정
제8조(지도·점검)	지도·점검의 근거 및 조치 규정
제9조(결과보고)	결과보고 제출(제1항) 및 미제출 시 조치사항(제2항) 규정
제10조(승인관리 등)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공개(제1항) 및 보존·관리 의무(제2항) 규정
제11조(무단 사용 시 조치)	무단 사용 시 조치 규정

나. 사용신청(안 제4조)

- 안 제4조(사용신청)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 제1항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신청기한을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사의 성격이나 일정 확정 시점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신청기한을 원칙적으로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로 예외를 허용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신청기한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을 “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로 변경하여 후원명칭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제4조에 대한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조(사용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단체”라 한다)는 <u>후원명칭 사용예정일</u>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 -----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u>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u> - ----- ----- -----.
1. ~ 6. (생 략)	1. ~ 6.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 안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항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에 설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사위원회 설치 권한이 있는 “의장”을 설치 주체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4항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의정국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인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원장 포함하여 총 5인으로 명시하면서 4인만 지정되어 있어 1인을 추가로 명시해야 함.
 - 제7항은 위원회 간사를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급 기준 규정은 실제 담당 직위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사를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라. 승인취소 등(안 제7조)

- 안 제7조(승인취소 등)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응하여 승인취소 및 재승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항은 승인취소 사유를 승인 요건 위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명시함.
 - 제2항은 승인취소에 앞서 신청단체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승인취소가 신청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법상¹⁾ 의견제출 보장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임.

- 다만 제2항 단서의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은 승인취소로 인한 권리 제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명 기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국민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긴급성을 이유로 예외를 두는 경우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 특히 제3항에서 승인취소 시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 보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제2항 단서는 삭제하여 소명기회를 일관되게 보장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정안 제7조에 대한 수정의견>

제례안	수정의견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신청단체에게 위원회의 승인취소 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

1)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들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 <삭 제>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③ (제정안과 같음)

마. 승인관리 등(안 제10조)

- 안 제10조(승인관리 등)는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황을 관리·공개하고 승인사항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록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과정의 책임성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²⁾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³⁾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예규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후원명칭 제도를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례로 제정하여 후원명칭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할 때,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을 내부 행정규칙인 예규만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규범력을 갖춘 조례로 제정하는 방향은 타당함.
- 다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원명칭 사용 신청 기한을 원칙과 예외 구조로 완화하고, 심사위원회의 설치 주체 및 간사 직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승인취소와 같이 신청단체에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명 기회가 일관되게 보장되도록 관련 단서를 정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고 예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기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설치 주체와 위원·간사 구성을 명확히 하고, 승인취소 시 소명기회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며 사용승인 현황공개의 유연성을 확보함.

나. 수정의 주요내용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고 예외 규정을 추가함(안 제4조).
- 심사위원회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 및 간사를 직위 기준으로 정비함(안 제6조).
- 사용승인 취소 시 부여되는 소명기회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 의무인 사용승인 현황공개를 임의규정으로 정비함(안 제10조).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재직의원 13명, 출석위원 7명, 찬성 7명)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190
----------	------------

제안년월일 : 2025년 12월 22일
제안자 : 윤영위원장

1. 수정이유

-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고 예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기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설치 주체와 위원·간사 구성을 명확히 하고, 승인 취소 시 소명기회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며 사용승인 현황공개의 유연성을 확보함.

2. 주요내용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고, 예외 규정을 추가함(안 제4조).
- 심사위원회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 및 간사를 직위 기준으로 정비함(안 제6조).
- 사용승인 취소 시 부여되는 소명기회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 의무인 사용승인 현황공개를 임의규정으로 정비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원명칭 사용예정일”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후원명칭”을 “의장은 후원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명으로”를 “5명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4인의 부서장으로”를 “부서장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사용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단체”라 한다)는 <u>후원명칭 사용 예정일</u>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② (생 략)</p>	<p>제4조(사용신청) ① ----- -----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u>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u> ----- ----- -----.</p> <p>1. ~ 6.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p> <p>① <u>후원명칭</u> 사용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 략)</p> <p>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5명</u>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의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의 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u>4인의 부서장으로</u> 한다.</p> <p>⑤ · ⑥ (생 략)</p> <p>⑦ 위원회의 간사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업무 담당 <u>사무관</u>으로 하며, 위</p>	<p>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p> <p>① <u>의장은 후원명칭</u> ----- -----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 <u>5명</u> 이내로 -----.</p> <p>④ ----- ----- ----- ----- <u>부서장으로</u> --.</p> <p>⑤ · ⑥ (제정안과 같음)</p> <p>⑦ ----- <u>팀장</u>-----</p>

<p>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p> <p>제7조(승인취소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경우 신청단체에게 위원회의 승인취소 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u>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③ (생략)</p> <p>제10조(승인관리 등)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의회 누리집에 <u>공개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p> <p>-----.</p> <p>제7조(승인취소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p> <p>-----</p> <p>-----</p> <p>-----. <삭 제></p> <p>③ (제정안과 같음)</p> <p>제10조(승인관리 등) ① -----</p> <p>-----</p> <p><u>공개할 수 있다.</u></p> <p>② (제정안과 같음)</p>
---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칭, 휘장 등 의회 상징물 전체를 말한다.

제3조(승인 대상)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 관련 업무 또는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성 행사
3. 그 밖에 공익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성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2. 단순한 공연성 행사

3.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4. 안전관리·예산지원 등 행정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사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사

제4조(사용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단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다)
 3. 신청단체의 현황
 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의장 명의의 상장수여(이하 “상장수여”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장수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단체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목적, 내용 및 규모
3. 신청단체의 설립목적, 운영현황, 행사개최의 역량
4. 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대한 후원요청 여부와 결과
5. 상장수여에 대한 타당성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후원명칭 사용신청 및 상장수여 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의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의 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부서장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간사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의장은 신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신청단체에게 위원회의 승인취소 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신청단체에 대하여는 취소 의결일 기준 3년의 범위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도 · 점검)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기간 동안 승인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고, 신청단체가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단체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청단체가 제1항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승인관리 등)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무단 사용 시 조치) 의장은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사용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안전관리·예산지원 등 행정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후원기관 명칭 사용신청은 승인 불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 기관 · 단체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팩 스			
		E - m a i l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					
행 사 주 죄					
행 사 주 관					
요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후원명칭 승인 <input type="checkbox"/> 상장				
요 청 사 유					
후 원 예 정 기 관 · 단 체 명					
행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 사 장 소					
참 석 대 상	참 석 인 원 (추 정)			명	
위 행사에 대한 귀 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p>※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계획서(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1부.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조직, 연혁, 인력현황, 사업 등) 1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상장 요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별지 제2호서식) 1부.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상장수여 신청서

신청내용

상 장 매 수	<input checked="" type="radio"/> 매
발 급 방 법	<input type="checkbox"/> 수상자 성명 기재 <input type="checkbox"/> 수상자 성명 미기재(성명란 공란)

심사계획

심 사 방 법	(예시) - 심사위원회 구성현황(내부, 외부인사 구분) - 심사절차(예선, 본선) - 심사기준(예선, 본선) - 수상자결정방법(순위 및 점수)
시 상 계 획	(예시) - 대통령 표창 - ○명 - 서울시의장상 - ○명 - 서울시장상 - ○명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제출

* 상장에 수상자 성명 기재 희망 시, 수상자 결정 후 다음 양식에 따라 수상자 인적사항 제출

연번	이름	소속	직위(직업)	생년월일	비고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행사결과보고서

행사개요

행사명	※ 행사결과보고서는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주최	
주관	
일시	
장소	
참여인원	
후원받은 내용 (타기관 후원명칭 사용 포함)	

상장수여 내역

연번	이름	소속	직위(직업)	생년월일	비고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우수상

행사결과

- 행사홍보 또는 안내방법(사본첨부)
- 행사진행 경과, 참석자 내역 등
- 시상내역(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시장상 등)
-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행사사진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연번	주최/주관 기관 또는 단체	행사명	일시	장소	승인사유	비고
1						
2						
3						

후원명칭 사용 불승인 관리대장

연번	주최/주관 기관 또는 단체	행사명	일시	장소	불승인사유	비고
1						
2						
3						